

제2916호
2022. 4.20.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28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포함) 전부가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2-2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8

● 고 시

제2022-31호 :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33

제2022-3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6

제2022-3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7

● 공 고

제2022-275호 :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구매 공고 38

제2022-303호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4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28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포함) 전부가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금연환경 조성 정책 방향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변경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금연구역 지정 구역 정비 및 지정이 필요한 지역(장소) 추가

- (정비) 지정 구역 관련 해당 법령 조항 정비
- (추가) 아동복지시설 경계면 10미터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등
- 그 밖에 필요한 지정 장소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인상

- (기준) 1일 4만원
- (변경) 1일 5만원(서울시 다른 자치구 수당 및 물가상승률 감안 반영)

라. 시행규칙에 지정(신청) 장소의 구체화 및 금연구역 지정 절차 규정 마련

- 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지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마련
-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학교 통학로, 주민공원, 마을마당, 흡연모임지로 간접흡연 피해 지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건강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건강관리과 건강마음팀 (무학동, 중구보건소), 전화: 02-3396-5672, 팩스: 02-3396-8899, 전자우편: seeke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의식 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시설 및 장소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흡연행위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금연단속원을 채용하여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구역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하는 관할 구역 소재지 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구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로써 지정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단, 필요한 장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구분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지정 신청에 관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타구 자치단체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장소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해제(이하 "금연구역의 변경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금연구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나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흡연구역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구청장은 설치된 흡연구역이라도 시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거나, 보행 장애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한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구역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내 여러 흡연시민의 흡연권리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나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구청장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통행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흡연부스의 관리자 등에게 흡연부스 시설을 개수·개선 또는 이동토록 요구해야 한다.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철거를 권고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이 금연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장소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학교가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비 및 금연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로 하여금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사업체, 학교 및 그 밖에 상담을 요청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동기 부여를 위해 금연보조제 등 금연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금연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른 온라인공청회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탈모)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금연지도원 등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및 금연홍보대사 등에게 활동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활동수당과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 영 별표 5 제2호바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탈모)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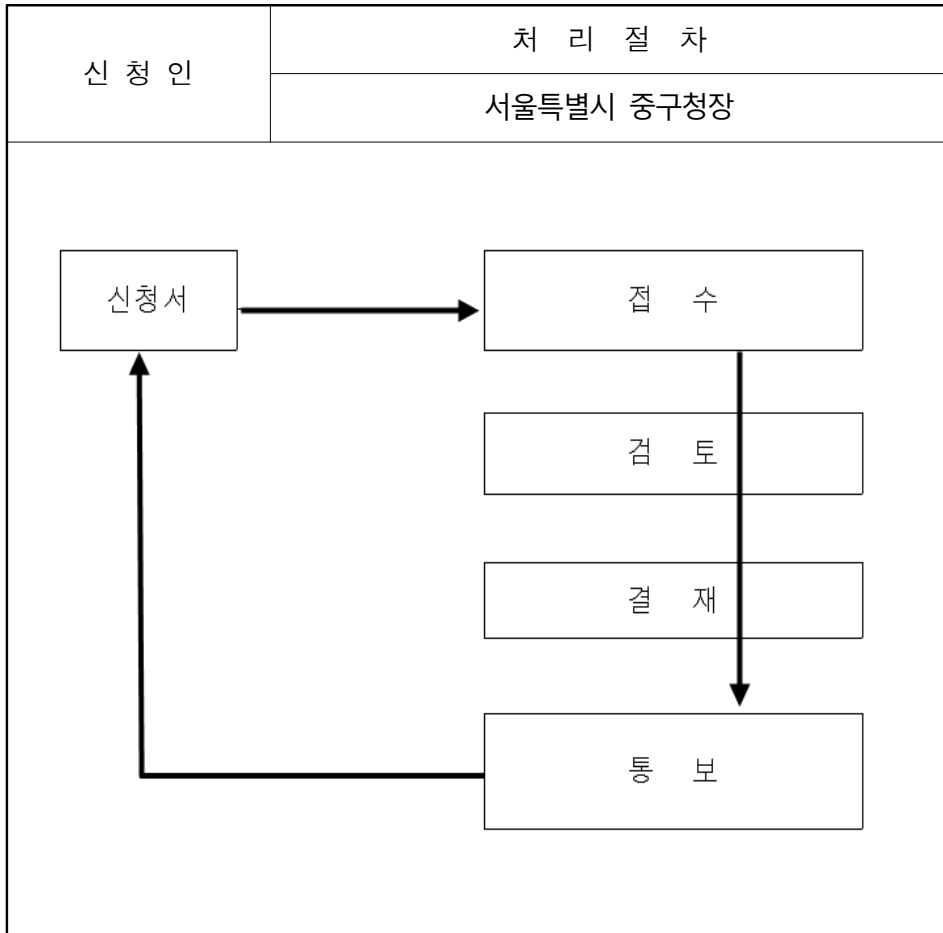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추천에 동의하고, 귀 구의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제20 -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사·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02-3396-5673

- 색상: 연파랑 / 크기: 60mm×90mm
-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또는 플라스틱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탈모)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전화번호
	⑤ 주 소		
⑥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출입 장소			
⑧직무수행범위			
<p>「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로 지역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조례 제5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
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건은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같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
 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건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
 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건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 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별표] <개정 2022. 5. 1.>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5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세로형 또는 세로 2면형에서 택

가) 세로형: 60cm×190cm

나) 세로 2면형: 210cm×160cm

2) 재질: 메타세라미어 자연속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세로 2면형)

가) 좌측: 금연로고 표시, 금연공원 표시

나) 우측상단: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다) 우측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0월 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아래)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라) 세로형의 경우 상단에 금연공원 및 금연로고 표시, 중앙 및 하단에 상기 1)의 나) 및 다)를 표시할 것

2) 글씨체: 국문-한양태백볼트체, 서울남산체EB / 영문-헬베티카볼트체

3) 색상

가) 바탕색: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도안 예시>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60cm×80cm(세로형)

2) 재질: PVC재질(양면), UV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상단: 서울특별시 중구 브랜드 표시

나) 우측상단: 간접흡연제로 서울 로고 표시

다) 중앙: 금연버스정류소 이미지 표시

라)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0월 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헬베티카볼트체

3) 색상

가) 바탕색: 흰색

나) 글씨: 검정색흰색, 적색(DIC 2483)

다) 테두리: 연두색(C40Y100)

라) 픽토그램: 초록색(C40Y100)

<도안 예시>



3.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30cm×50cm(세로형)

2) 재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여기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 가) 바탕색: 흰색
- 나) 글씨: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 다) 테두리: 없음
- 라) 픽토그램: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도안 예시>



4. 어린이놀이터, 주유소, 전통시장, 특화거리, 공개공지 등 기타 금연구역

- 가. 규격 및 재질: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 나. 도안요령: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금연구역 상황에 맞게 안내문구 표기하여 시행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 가.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오일 스테인 도장
- 나. 도안요령
 - 1) 내용
 - 가) 상단: 흡연구역 표시
 - 다) 하단: 흡연구역 로고 표시

※ 하단에 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 기재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 가) 바탕색: 공원색(DIC 644)
- 나) 글씨 및 흡연로고: 흰색

<도안 예시>



다. 흡연부스의 경우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 1)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중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중문을 다른 외국어로 대체하여 기재 가능)

나. 설치방법

-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유실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 1)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 3) 안내표지판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건물명				
	⑤ 주 소						
⑥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의 소유자(관리자)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2 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동의서					
금연구역 장소명					
소재지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대상범위	<input type="checkbox"/> 공개공지 <input type="checkbox"/>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input type="checkbox"/>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에 인접한 보도				
신청인(대표)	기타사항	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O” 또는 “V”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					
작성일자 정보	※ 권한 위임 사항 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주체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점유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개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금연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범위 (연장(m) 또는 면적(m ²))			
⑨ 시설 정보	⑩ 시설명			
	⑪ 시설장(대표)			
	⑫ 소재지			
	⑬ 원아수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b style="font-size: 1.2em;">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2.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2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동의서

시설명		시설종류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소재지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신청 범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				
신청인(대표)			기타사항	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학부모로서 지정에 찬성(동의인)		시설 근무자 등으로서 지정에 찬성(동의인)			
학생명	생년월일	학부모명	성명	주소	시설과의 관계
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람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동의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⑥ 금연구역 지정(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²))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상기 지역 생활주민(인접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견 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div>			
제출서류	1.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2.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의2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동의서					
금연구역 장소명칭					
소재지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²))				
신청인 (성명)	기타사항	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					
주민으로 지정 찬성(동의인)			기타(인접 지역 영업자, 직장인 등)		
성명	주소	건물명	성명	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영업소명
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					
※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div>					
작성자 정보	※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29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
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
 - (사업자)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환경교육 실시 노력
 - (구 민)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등
-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9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업무 수행 범위, 위탁운영 등)
- 재정지원(안 제10조)

- 환경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 실비지급, 표창(안 제11조, 제12조)
- 환경업무와 관련한 소요경비 지원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실비 지급
-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환경과, 전화 : 02
-3396-5632, 팩스 : 02-3396-8765, email : amy.kimj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교육자료(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2. 구청, 구청이 설립한 공단 및 출차·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광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1. 환경교육 정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공
-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
-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실비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1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02호(2019.1.1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동법 시행령 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32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변경결정사유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공동개발 권장, 지정 계획을 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역	획지			기 타	비 고
				위치	지번	면적		
당초	75	-	도심주거구역 B	남산동2가	5	82.60	-	-
				남산동2가	6-1	770.90		
				남산동2가	9-2	87.90		
				남산동2가	9-3	41.70		
변경	75	-	도심주거구역 B	남산동2가	5	1,520.6	공동개발지정	신설
				남산동2가	6-1			
				남산동2가	9-2			
				남산동2가	9-3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사유서(신설)

구 분	도면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변경	75	공동개발(신설)	· 동일소유 필지에 대한 공동개발 지정

라. 관련도면 : 게재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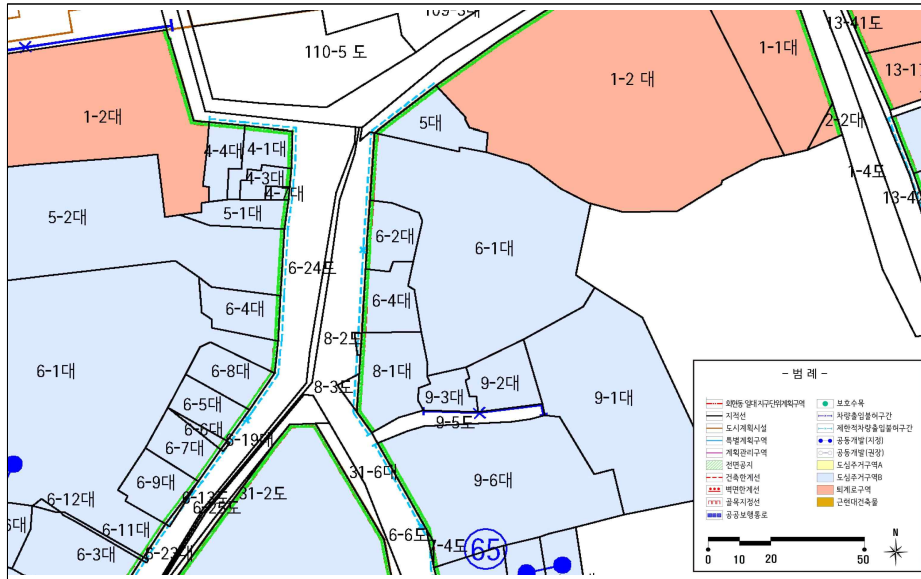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바. 비치장소 및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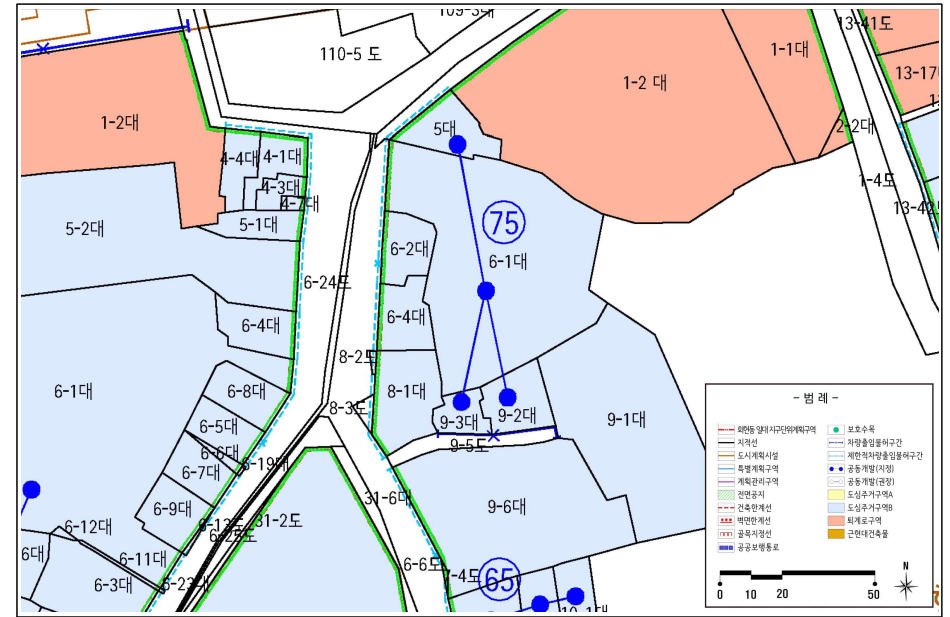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사.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

■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45-2 외6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8-4	2022. 4. 20.	신청에 따라 을지로4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을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1-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86	2022. 4. 20.	신청에 따라 다산로4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1-2 외1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다길 54	2022. 4. 20.	신청에 따라 다산로42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86	2022.4.20.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4	2022.4.20.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275호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공매 공고

우리구 불법 및 부정주차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중구견인차량 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별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다 음 -----

- 1. 공매공고일정
 -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2년 04월 20일 09:00 ~ 2022년 05월 04일 18:00
 -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2년 05월 04일 18:00
 -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22년 05월 06일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결과조회)
 - 라) 낙찰자 대금납부 : 2022년 05월 06일 14:00부터 2022년 05월 13일 14:00까지
- 2. 매각대상 차량 : 1대(차량조회 목록참조)
- 3. 차량인도 절차
 - 매각 결정된 자동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에 舊자동차 번호판을 반환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번호판은 별도 수령없이 등록가능함)

- 4. 공매입찰 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 (주) 오토마트(www.automart.co.kr)
-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가)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임)
 - 나) 마감기간 내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예정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하고(기한 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 제외됨), 입금자 명의로 입찰등록자명의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2-864648 예금주: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 계약(낙찰잔금입금)계좌 : 상동
 - 라) 유찰된 공매보증금은 이자가산 없이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계좌번호로 환불처리 합니다.
 - ※ 반환 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입금자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 낙찰된 자의 계약보증금은 공매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바)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6.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 다)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라)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단독입찰불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규정 적용)
-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 후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로 충당됩니다.
- 8. 차량인수 및 하자책임
 - 가) 낙찰자는 잔금완납 후, 14일 이내에 명의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차량 미인수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매보증금의 납부잔금은 반환)

- 나)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인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합니다.
- 다) 낙찰된 차량의 권리에이전에 따른 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라) 낙찰된 차량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무상의 하자나 물건의 성능 규제, 규격,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 등의 열람, 현물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중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체육공원공영주차장
 -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9. 공매중지

- ※ 낙찰자가 명의이전 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10.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나)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각차량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 하셔야 합니다.
- 라)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마) 명의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단이 임의처분 합니다.
- 바)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은 행정상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이전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증(명의 이전 완료분)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자동차를 인수할수 있음.
- 사)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보관일시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1	서울52마4939	엘란트라	승용중형	2021-06-10 16:19:00 PM	박*익외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1번지 26/2 도시개발아파트 101동 3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고시 제2020-151호(2020.11.18.)로 사업시행인가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소재불명자)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사 업 명 :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주)트윈웍스피에프비이 대표이사 정선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30, 대성빌딩 3층)
4. 공고기간 : 2022.04.20.~2022.05.04.(15일간)
5. 공고내용 :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 협의기간 : 2022.04.20.~2022.05.19.
 -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30(대성빌딩 3층) (☎ 02-2268-1423)
 - 협의방법 : 서면통지 및 소유자 면담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이격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지급

6. 공시송달 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등기부등본주소 (주민등록상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96-1	61.3100	김재송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5길 37 (을지로4가)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0	7.2933	박창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9길 21(상도동)				

구분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등기부등본주소 (주민등록상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5	1.8818	정금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2(입정동)				공유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5	0.3136	최재석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450, 901동 1402호(대림동,대구혁신센터 힐스)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5	1.8818	한승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2(입정동)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5	1.2545	한춘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천동 20-5 아파트 162동 22호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6	0.1818	최기화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609				공유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6	0.3636	김보년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4-1(입정동)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6	0.3636	김영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4-1(입정동)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6	0.1818	김혜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4-1(입정동)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8-16	0.1818	김혜자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24-1(입정동)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5-2	29,800 0	김경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8동1003호(일원동, 샘터마을아파트)				
토지,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64-8	45,3000	박근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산138				

7.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재결이 신청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